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배진석 의원 외 25명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배진석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로 제명 변경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용
어 변경
-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함
-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신설함
-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일부 개정함
- 경과조치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가. 제안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와 통합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법 및 조례 등에 따라 당해 지출계획과 운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여유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긴급한 세입 감소와 같은 위기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본 조례안은, 여유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